

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

제정 2025. 3. 4. 조례 제372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징물”이란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기: 별표 1
2. 문장: 별표 2
3. 비전브랜드: 별표 3
4. 마스코트·캐릭터: 별표 4
5. 시의 꽃(개나리): 별표 5
6. 시의 나무(은행나무): 별표 5
7. 시의 새(독수리): 별표 5
8. 시의 노래: 별표 6

제4조(시기) ① 시기의 규격은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 제7조를 준용하고,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.

② 시기의 안양시 명칭에 대한 서체는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자 등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

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

④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.

제5조(문장의 사용) ① 문장은 휘장(徽章) 또는 철인(鐵印)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.

1.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

2.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, 외국 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

3.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·인가·면허 등 증명서,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·관리하는 물자

2.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, 표창장 및 신분증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품

제6조(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)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(상징물의 관리)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
2.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
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)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,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, 사용 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

사용 승인을 거치되,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 등)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)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
3.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면 비상설로 운영하되,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: 안양시의회 의원, 시의 공무원
2. 위촉직 :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.

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위반 시 조치사항)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

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

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양시 시기 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별표 1]

시 기



바탕은 청색(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지정색인 안양블루 색상)

글자는 흰색

원형은 흰색

원형의 크기는 깃면의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

지름은 깃면 너비(세로)의 2분의 1로 하며, 모양은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심볼

마크의 작도법 적용

[별표 2]

문 장



- 안양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새로운 수도권에의 개막과 함께 경기지역의 중추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안양시의 기상과 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안양시의 체계적인 행정상을 표현함은 물론 안양시민들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음.
- 안양시개성화사업규정 지정색인 안양블루 색상을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색상을 달리할 수 있음.

[별표 3]

비전브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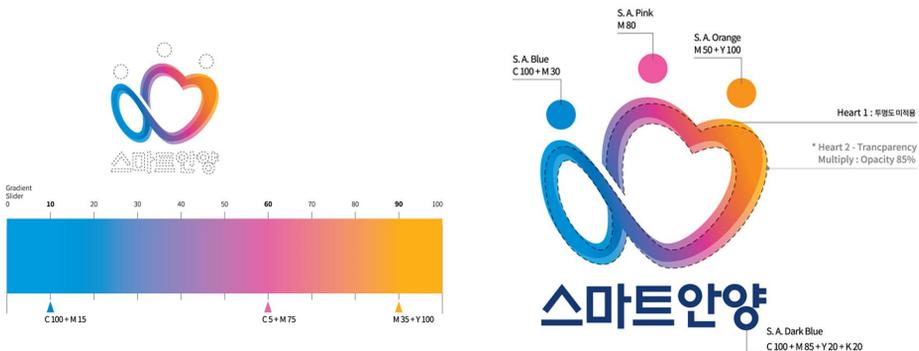
1. 비전브랜드



2. 비전브랜드 소개

-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안양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나가겠다는 도시 비전의 의지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함.
- 한 가족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무한을 의미하는 피비우스 띠 형상으로 표현하여 도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을 상징화하였으며, 피비우스 띠 형상 속의 ‘하트’ 이미지는 시민의 무한한 행복을 의미.
-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그라데이션과 ‘스마트안양’ 로고타입을 통해 스마트한 에너지가 넘치는 젊고 역동적인 스마트도시 안양의 이미지를 표현함.
- 블루색상 계조는 첨단과 젊음을 상징하고, 핑크·옐로우 색상 계조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안양의 약속, 열정, 행복을 의미.

3. 색상



[별표 4]

마스코트·캐릭터

1. 시의 마스코트 - 포동이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안양을 상징했던 포도를 형상화했으며 안양시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관계를 좀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함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시의 캐릭터 - 포동이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시의 마스코트인 포동이를 최근 SNS 추세에 맞게 새로 디자인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 5]

1. 시의 꽃 - 개나리



○ 해마다 첫봄을 알리는 개나리는 번식과 성장이 빠르고 아름다워 사랑과 의욕이 충만한 시민 정신을 잘 나타내며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생태는 안양 시민의 저력을 과시함.

2. 시의 나무 - 은행나무



○ 은행나무는 오래 살고 병충해에 강하며 열매를 잘 맺고 또 잎이 곱기로도 유명함. 그래서 시에서는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었으며 안양시의 번영을 나타내 주고 있음.

3. 시의 새 - 독수리



○ 드높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 안양시민의 왕성한 기상과 안양시의 번영을 뜻함.

[별표 6]

시의 노래

안양시민의 노래

작사 김대규
작곡 안예림

관 악 정 기 이 어 받고 수 리 기 습 닦 은 터에
관 악 따 라 높은 의 기 수 리 닦 아 맑 은 인 정

모 이 었 다 힘 찬 역 군 이 루 었 다 복 지 사 회 포 도
일 터 마 다 힘 찬 노 래 집 집 마 다 환 환 웃 음 안 양

알 알 서 린 전 통 더 빛 내 어 불 려 주 리 내 -
천 은 구 비 구 비 내 일 향 해 뻗 어 간 다 내 -

몸 마 음 - 다 바 쳐 내 고 장 을 빛 내 리 라 아 아
한 정 성 - 한 결 같 이 내 고 장 을 지 키 리 라

슬 - 기 로 맞 이 할 새 - 날 의 새 역 사 아 아

그 이름 영 - 원 무 궁 영 광 의 - 안 - 양

[별지 제1호서식]

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	
신 청 인	단 체 명
	대 표 자
	생 년 월 일
	주 소
	연 락 처
사 용 상 징 물	
사 용 기 간	
사 용 목 적	
사용내용(구체적으로)	
<p>위와 같이 안양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 요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</p>	
안양시장 귀하	
<p><첨부자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의 경우 : 사용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해당되는 경우) 사본 각 1부 ○ 법인의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용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	

[별지 제2호서식]

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		
신 청 인	단 체 명	
	대 표 자	
	생 년 월 일	
	주 소	
	연 락 처	
사용 상징물		
사 용 기 간		
사 용 목 적		
변경내용 및 사유(구체적으로)		
위와 같이 안양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승인 요청합니다. 년 월 일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		
안양시장 귀하		